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 (송정빈 의원 발의)

의안 번호	관련 1865
----------	------------

발의년월일 : 2021년 4월 28일

발 의 자 : 송정빈 의원(1명)

찬 성 자 : 김정환, 송명화, 이광성, 김기덕
김기대, 신정호, 유정희, 강대호
봉양순, 송재혁 의원(10명)

1. 제안이유

2020년 12월 17일 제298회 정례회 서울특별시의회 제6차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수도요금을 한시적으로 감면(50%)할 수 있도록 이를 반영하여 번안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수도요금 감면 대상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과 300톤 이하 수도사용자를 한시적으로 추가함(안 제31조제1항제11호)
- 나. 수도요금표의 업종별 사용요금 단가를 일부 조정함(안 별표 2)
- 다. 조례 시행일 및 수도요금표 변경에 따른 적용례를 수정함(안 부칙 제1조 및 제2조)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

2020년 12월 17일 제298회 정례회 서울특별시의회 제6차 환경수자원 위원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번안한다.

안 제31조제1항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과 300톤 이하 수도 사용자등의 사용량의 100분의 50(2021년 7월 납기분부터 12월 납기 분까지 일반용 및 욕탕용에 한해 적용)

안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안 부칙 제1조 및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도요금표 변경에 따른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사용요금 적용년도의 7월 1일 사용량부터 적용한다.

【 별표 2 】

수도요금표(1개월 기준)(제23조 관련)

수도계량기 구경별기본요금		사 용 요 금(원/㎥)				
구 경 (mm)	요 금 (원)	구분 업종	사용구분 (㎥)	적용년도		
				2021년	2022년	2023년부터
15	1,080	가정용	구분 없음	390	480	580
20	3,000					
25	5,200	육탕용	0~500	400	440	500
32	9,400					
40	16,000		500초과	440		
50	25,000					
65	38,900	공공용	0~300	920	폐 지 (일반용으로 통합)	
75	52,300					
100	89,000		300초과	1,040		
125	143,000					
150	195,000					
200	277,000	일반용	0~300	980	1,150	1,270
250	375,000					
300	465,000		300초과	1,040		
350	565,000					
400이상	615,000					

[별표 1]
급수업종 구분표(제23조 관련)

업종별	구분내용
가정용	가. ~ 아. (생략) 자. 전용급수 설비를 설치하고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된 노인복지주택과 고시원(단, 오피스텔 제외)
유택용	가.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목욕장업(단, 관광호텔안의 목욕장은 일반용 적용)
공공용	가. 공공시설에 대한 급수로 다음 “나”호부터 “하”호를 포함한 단
	나. 소화전 및 급수탑에 의한 급수(단, 공공의 목적으로 급수하는 경우에 한함)
	다. 시립 및 구립 위탁시설(청소년회관, 체육시설에 한함)
	라. 공장등록을 필한 준공업지역내의 공장(준공업지역내 상가와 분리된 아파트형 공장 포함)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직영사업, 출연 연구기관 포함)
	바. 학교(유치원 포함)
	사. 정당
	아. 병영
	자. 신문사, 방송국
	차. 시장이 지정한 무료 공중이용 화장실에 대한 급수
	카. 수도시설이설 등에 따른 퇴수·세척용수(단, 최종단계 요율 적용)
	타. 의료기관(「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의한 안마원·안마시술소 포함)
	파. 종교법인에 등록된 종교단체
	하. 철도운송업 및 도시철도 운송업

[별표 1]
급수업종 구분표(제23조 관련)

업종별	구분내용
가정용	가. ~ 아. (현행과 같음) 자. ----- ----- ----- (다만, -----)
유택용	가. ----- ----- (다만, -----)
	<u><삭제></u>

[별표 1]
급수업종 구분표(제23조 관련)
(개정안과 같음)

가. 다른 급수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급수

나. 임시급수, 건축공사장에 대한 급수(신축 또는 기존건축물 멸실 후 건축하는 경우에 한함)

다. 수도시설 파손 등 손괴로 인한 누수량(퇴수·세척용수 포함) 및 급수차사용량과 운반급수는 최종단계 요율 적용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일
반
용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삭 제>

가. -----

-----경우로 한정)

나. -----

----- 운반급수

다. 소화전 및 급수탑에 의한 급수(다만, 공공의 목적으로 급수하는 경우로 한정)

라. 시립 및 구립 위탁시설(청소년회관, 체육시설로 한정)

마. 공장등록을 필한 준 공업지역내의 공장(준공업지역내 상가와 분리된 아파트형 공장 포함)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직영사업, 출연 연구기관 포함)

일
반
용

사. 학교(유치원 포함)

아. 정당

자. 병영

차. 신문사, 방송국

카. 시장이 지정한 무료 공중이용 화장실에 대한 급수

타. 수도시설이설 등에 따른 퇴수·세척용수

파. 의료기관(「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의한 안마원·안마시술소 포함)

하. 종교법인에 등록된 종교단체

거. 철도운송업 및 도시철도운송업

너. 그 밖에 가정용 또는 욕탕용에 속하지 않는 급수

[별표 2]

수도요금표(1개월 기준)(제23조 관련)

수도계량기 구경별기본요금		사 용 요 금		
구 경 (밀리미터)	요 금 (원)	구분 업종	사용구분 (세제곱미터)	세제곱미 터당 단가(원)
15	1,080	가정 용	0~30이하	360
20	3,000		30초과~50이하	550
25	5,200		50초과	790
32	9,400			
40	16,000	육탕 용	0~50이하	360
50	25,000		50초과~2,000이하	420
65	38,900		2,000초과	560
75	52,300			
100	89,000	공공 용	0~50이하	570
125	143,000		50초과~300이하	730
150	195,000		300초과	830
200	277,000			
250	375,000	일반 용	0~50이하	800
300	465,000		50초과~300이하	950
350	565,000		300초과	1,260
400이상	615,000			

[별표 2]

수도요금표(1개월 기준)(제23조 관련)

수도계량기 구경별기본요금		사 용 요 금				
구 경 (밀리미터)	요 금 (원)	구분 업종	사용구분 (m)	적용연도		
				2021 년	2022 년	2023 년부터
15	1,080	가정 용	구분 없음	430	500	580
20	3,000					
25	5,200					
32	9,400					
40	16,000	육탕 용	0~500	490	570	620
50	25,000					
65	38,900		500초과	510		
75	52,300					
100	89,000	공공 용	0~300	920	폐 지 (일반용으로 통합)	
125	143,000					
150	195,000		300초과	1,040		
200	277,000					
250	375,000	일반 용	0~300	1,020	1,160	1,270
300	465,000					
350	565,000		300초과	1,150		
400이상	615,000					

[별표 2]

수도요금표(1개월 기준)(제23조 관련)

수도계량기 구경별기본요금		사 용 요 금				
구 경 (밀리미터)	요 금 (원)	구분 업종	사용구분 (m)	적용연도		
				2021 년	2022 년	2023 년부터
15	1,080	가정 용	구분 없음	390	480	580
20	3,000					
25	5,200					
32	9,400					
40	16,000	육탕 용	0~500	400	440	500
50	25,000					
65	38,900		500초과	440		
75	52,300					
100	89,000	공공 용	0~300	920	폐 지 (일반용으로 통합)	
125	143,000					
150	195,000		300초과	1,040		
200	277,000					
250	375,000	일반 용	0~300	980	1,150	1,270
300	465,000					
350	565,000		300초과	1,040		
400이상	615,000					